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전면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38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전면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조례, 정관, 기타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말한다.
2. “직원”은 일반직,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
3. “일반직”은 정규직으로 상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전문계약직”은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로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5. “일반계약직”은 일반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로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6. “무기계약직”은 3호부터 5호까지를 제외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7. “기간제근로자”는 3호부터 6호까지를 제외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4조 (조직) 재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조직 및 정원 조정) ① 재단이 조직을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성시 업무소관 부서와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 운영상 TF조직이 필요할 경우 화성시 업무소관 부서와 협의한 후 정원의 범위 내에서 TF조직을 신설 또는 개편할 수 있으며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TF조직을 해체하여야 한다.

제6조 (정원) ① 재단의 일반직, 계약직 직렬·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원에 포함하는 임직원은 대표이사, 일반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예상되거나 전단의 정원에 포함하는 직원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일반계약직은 정원에 포함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1년 이하로 사용하는 전문계약직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제2항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따라 채용하는 일반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예상되더라도 제2항 본문의 정원에 포함하는 직원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일반직 4급부터 6급까지의 직원이 「인사 규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이나 6개월 이상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일반직 6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인사 규정」제36조제1항제1호의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인사 규정」제36조제2항제3호의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 일반직 4급부터 6급까지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규정」제17조에 따른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일로부터 일반직 6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연수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 또는 파견된 사람의 복귀 이후 일반직 6급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하거나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 ⑧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 정원은 별표3에 따라 일반직에 상응하는 직급 정원에 포함한다.

제7조 (업무분장) 재단의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구성원

제8조 (임원)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구분한다

제9조 (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직의 직렬은 행정직, 기술직으로 구분하며, 직급은 2급부터 6급까지로 한다.
- ③ 계약직의 직렬은 행정직, 기술직으로 구분하며, 직급은 아래 각호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3호에 따른 계약직은 직렬과 직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1. 전문계약직: 특급, 가급, 나급
2. 일반계약직: 다급, 라급, 마급
3. 무기계약직

제4장 보칙

제10조 (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②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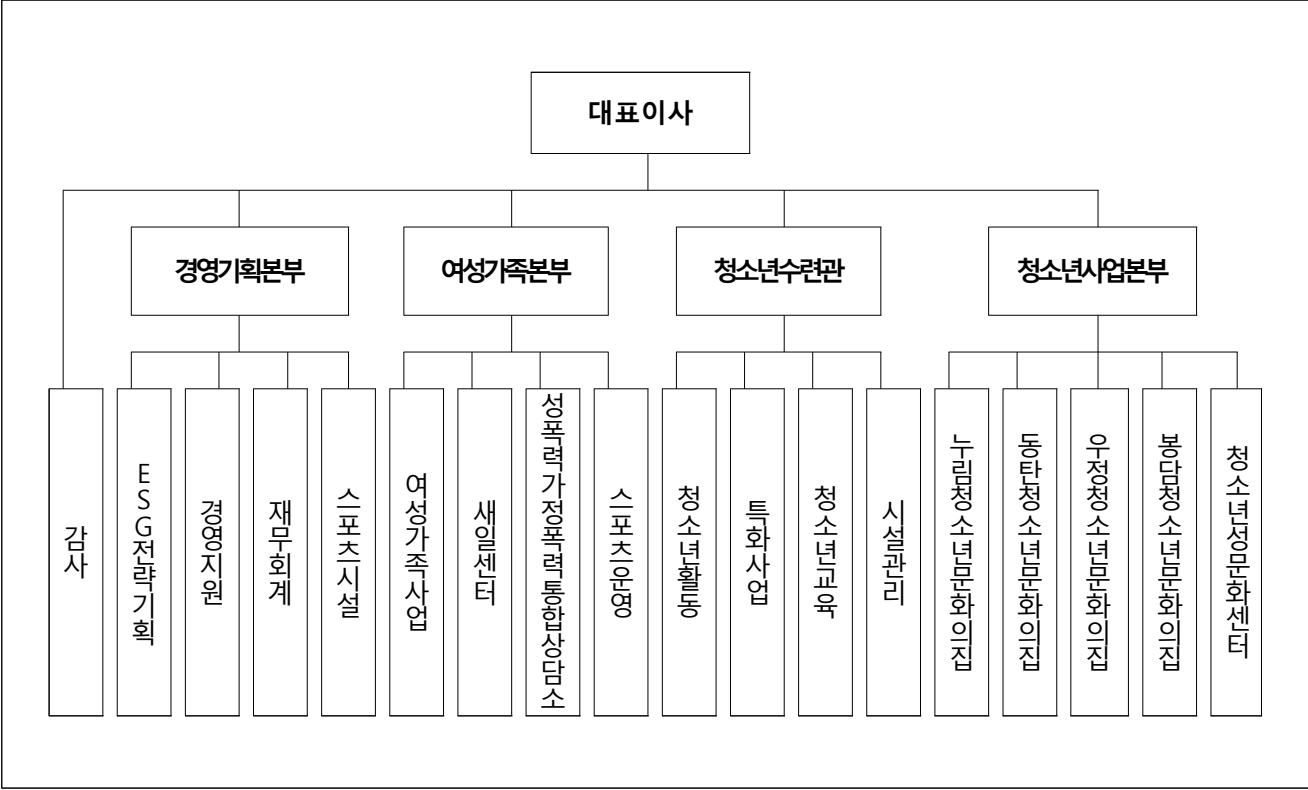
수 있다.

부칙 (2026. 8. 1. 규정 제1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기존 「공무직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조 직 표



일반직 및 계약직 정원표

□ 직렬별 정원표

구분	구분	정원	비고
합계		195	
일반직 및 계약직	총계	96	
	대표이사	1	
	행정직	79	
	기술직	12	
	행정+기술	4	
무기계약직	총계	99	

□ 직급별 정원표

구분	소계	대표이사	2급	3급	4급	5급	6급
총원	96	1	4	18	18	26	29
대표이사	1	1					
행정직	79		4	14	15	21	25
기술직	12				3	5	4
행정+기술	4			4			

- ※ 행정직: 일반행정(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등 포함)
- ※ 기술직: 전기, 기계, 소방, 난방, 통신, 전산 등
- ※ 파견공무원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직의 일반직 상당계급표

일반직 상당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문계약직	특급	가급	나급			
일반계약직				다급	라급	마급

업무분장표

본부·관	팀명	업 무 분 장	비고
감사팀		·감사 및 조사업무,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청렴 및 부패방지 업무	
경영기획본부	ESG 전략기획팀	·기획, 이사회운영, 조직관리, 규정관리, 경영평가 ·주요업무계획수립예산, 홍보 ·재단 전산 홈페이지 관리	
	경영 지원팀	·인사 급여·복무, 노무, 송무, 교육 복지 ·총무, 비서	
	재무 회계팀	·회계, 수입금 관리 ·계약, 지출결산	
	스포츠 시설팀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방재살 시설 장비 유지관리	
여성가족본부	여성가족사업팀	·여성 가족정책사업 개발 및 운영 ·동 서부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새일 센터팀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취업정보망 관리 ·직업훈련교육사업 및 취업 연계, 사후관리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 등 신고접수 및 상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조사연구	
	스포츠 운영팀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청소년 참여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체험활동, 공모사업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특화사업팀	·청소년놀터 운영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교육팀	·청소년교육프로그램운영 ·빙상장, 실내체육관 운영 및 관리 ·빙상장 정빙관리	
	시설관리팀	·시설관리, 방재살 시설장비 유지관리	
청소년사업본부	누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 운영 ·청소년 교육, 창의체험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 운영 ·청소년 교육, 창의체험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우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 운영 ·청소년 교육, 창의체험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봉담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 운영 ·청소년 교육, 창의체험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관리자 및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성보호 교육 ·성문화센터 홈페이지 운영	